

# 공공업무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자치단체청사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Convenience Facilities of the Physically Disabled in the Public Buildings - Focused on municipal buildings in Jeonbuk Province -

박 창 선\*  
Park, Chang-Su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disabled in the municipal buildings. The physically disabled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disabilities code in Korea. For this objective, the code and guideline were analysed, and based on the analysis the checklist was developed for field observation. Convenience facilities ought to consider various aspects like size, and spatial composition of facilities, safety factors. and the present conveniences facility regula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municipal buildings located in Jeonbuk province. The procedures for research was made to investigate the finding of architectural related code and faculty standards.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should be complemented and clarified guidelines in terms of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which in detail. If the disabled would be convenient to use municipal buildings facilities, there should be no difficulties. As a result, convenience facilities for disabled in the municipal buildings has been improved that the design concept for the disabled person in general architectural planning.

키워드 : 공공건물, 편의시설기준

Key words : Disabled person, Public building, Convenience facility regula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간성 회복 및 구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경제의 성장은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질과 수준의 향상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장애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 장애인에 관한 정책은 선천적 장애만을 의미하였고 이를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시설에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가 중점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천적 장애보다는 불의의 사고 및 노약자 등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증가로 제도 및 법적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제정, 1984년, 1985년, 1986

년, 1988년 건축법시행령에서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산발적인 편의시설 관련 규정들을 통합·일원화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1994년 제정, 1995년부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1997년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법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더 이상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누려야 할 당위성 및 권리를 인정하게 되어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공공건물에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과 접근권(right to access)의 부여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 정회원, 서남대학교 조교수, 박사수료

아직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한정되어 있으며, 시설 또한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은 이용대상자 모두에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어느 건물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필연적이어야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공업무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의 준수여부와 접근의 편리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라북도 내의 시청사와 도청사를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편의증진법상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을 정리하고, 접근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 이용편의시설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관찰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된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 이용편의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2. 이론적 고찰

### 2.1. 지체장애인의 정의 및 개념

사람의 몸은 골격, 관절, 근육, 신경, 혈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질병이나 외상에 의하여 지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지능에 장애가 올 때 지체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국가마다 여러 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분류인 ICIDH-2의 정의로 볼 수 있다.<sup>1)</sup>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 의학적 측면에서의 신체적 손상 및 기능상실의 장애(Impairment), 둘째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능력저하의 장애(Disability), 셋째, 신체적 손상 및 능력저하로 인한 정상적 사회참여 및 생활상의 총체적 장애(Handicap)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신체적 특징 및 능력저하라는 측면에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총체적 환경이 신체적 장애를 수용할 수 있을 때에는 무장애(barrier-free)사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들은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모두가 언젠가는 일시적 혹은 장기적인 신체의 장애를 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에 의한 기준도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으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갖게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은 양자 모두가 만족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 2.2.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편의증진법 제 4조에 보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완전한 사회참여 및 평등권을 의미하고 있으며 어떠한 시설에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접근권(Rights to Access)은 이동권과 같이 쓰이기도 하며, 장애인이 사회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이다. 접근권에는 물리적인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의 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정보 접근권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써의 권리중 하나가 이동권이다. 따라서 모든 시설로의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내·외부에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2.3. 장애인 시설 관련법규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규정은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총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표 1)에서와 같이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1985년 건축법시행령 제61조 2항, 1986년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제 55조 각 2항, 1988년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대상 건물 및 시설물에 따라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개정되어 왔으며, 1989년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권고 되었다. 그 결과 효율적인 법률적용에 어려움이 생겼고 장애인의 접근에 대한 논의가 점차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산발적인 편의시설 관련 규정들을 통합·일원화한 보건복지부령으로“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1994년 제정,

1) WHO, ICIDH-2:Beta-1, Draft for Field Trials June 1997. A Manual of Dimensions of Disablement and Functioning, 1997.

1995년부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1997년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법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장애인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접근성을 인정하고(제4조) 둘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제8조) 셋째,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소관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제11, 12조) 편의시설 기준으로 대상 시설별 편의 시설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으로 이중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이용하는 대중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표 2)와 같다.2)

표 1. 장애인 관련법 변천과정

법령	시행년도	내용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심신장애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권고
건축법시행령	1985	5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에 지체장애자를 위해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규정
건축법시행령	1986	공공시설 승강기 및 화장실 편의시설 규정
건축법시행령	1988	승강기의 구조 규정
장애인복지법	1989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설치 권고
보건복지부령	199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1998	장애문제를 둘러싼 사회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관련된 포괄적 내용의 법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표 2. 업무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관련 세부기준

편의시설 항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매개 시설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높이차가 제거된 건축물 주출입구	●
내부 시설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위생 시설	경사로	
	화장실	●
	화장실 대변기	●
	화장실 소변기	●
	화장실 세면대	●
안내 시설	장애인들의 사용이 가능한 욕실	-
	장애인들의 사용이 가능한 샤워실, 탈의실	-
	점자블럭	●
기타 시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기타 시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작업대	●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종 거실의 바닥면적 300㎡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공공업무시설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 및 안내 설비 중 전자문자 안내 설비는 민원실 등 이용이 많은 곳 외에는 권장 사항임

### 3. 사례조사 및 분석

조사대상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업무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시청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시청사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각종시설을 규정에 의해 정비 및 보완하였지만, 시설의 위치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일부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표 3. 조사대상 자치단체청사

용도	조사대상시설	비고
업무시설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군산시청, 익산시청, 김제시청, 남원시청	6개 자치단체청사

#### 3.1. 매개시설

##### 3.1.1 주 출입구의 보도 및 접근로

박창선

주 접근로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이동과 교통 및 경사로의 기울기에 관한 사항이다. 조사대상 청사의 유효폭에 대한 규격은 적합하였으나 NW청사 민원실 주출입구에서는 휠체어 하나가 겨우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유효폭이었다. 또한 주출입구까지 접근에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았고, 유도로 및 바닥 접자블럭이 만들어지지 않은 청사도 있었고, 진입부분에 점형과 진입방향에 선형의 유도블럭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해 접근성도 떨어지고 일반보도와의 식별이 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경사로는 OS청사, JJ청사의 기울기가 1/10로 임시철판으로 만들어져 기준에 미달되어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사로 (그림 1)과 같았고, 마감재의 재질은 비교적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시공되어 있었다.







구분 청사명	현황사진	유효폭 기울기	현황	비고
JB청사		2000mm 1/18	유효폭, 경사로 및 재질 규격에 적합함	유효폭 편의증진법 1200mm 이상 B.C.Code 1500mm 이상 ADAAG 915mm 이상
JJ청사		1400mm 1/10	유효폭은 충분하나 경사로 기울기 불리	
KS청사		1600mm 1/15	유효폭, 경사로 및 재질 규격에 적합함	
OS청사		2800mm 1/10	유효폭은 충분하나 경사로 기울기 불리	
KJ청사		1800mm 1/15	유효폭, 경사로 및 재질 규격에 적합함	
NW청사		1500mm 1/12	유효폭, 경사로 및 재질 규격에 적합함	

그림 1. 주출입구 보도 및 접근로

3.1.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공간의 폭은 승·하차 공간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각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JJ청사와 OS청사에서는 법규상 주차대수만 확보하고, 추

가 확보된 주차장은 장애자용 주차유효면적에 미달하였지만 장애인표시는 되어 있었고,, JB청사 및 KJ청사는 주차장이 주출입구 및 민원실과 반대방향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동선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규정에는 모두 만족하였지만, 문제는 이동 및 접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표 4.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분 청사명	유효면적	현황	비고
JB청사	3300×5000mm	전용주차장확보, 민원실 옆 위치, 경사도가 주차장과 반대편에 위치 동선이 길어짐.	주차공간폭 편의증진법 3300mm이상 B.C.Code 3700mm이상
JJ청사	3000×4800mm 2400×5000mm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공간이 있음, 주차장 인식표시 미흡, 접근성 양호	
KS청사	3300×5000mm	전용주차장 규격 확보 주차장 인식표시 양호 접근성 양호	ADAAG 3965mm이상
OS청사	3400×5100mm 2700×5200mm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공간이 있음. 주차장 인식표시 양호, 접근성 양호	승하차공간폭 편의증진법 1200mm B.C.Code 1200mm이상
KJ청사	3500×5000mm	전용주차장확보, 주차장 인식표시 양호, 위치 부적절 접근성 좋지 못함	ADAAG 1525mm이상
NW청사	3500×5000mm	전용주차장확보, 주차장 인식표시 양호, 접근성 양호	



그림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3.1.3 주 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조사대상 시청사 모두 주 출입구에 높이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경사로를 설치하여 높이 차이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일부 JJ청사에서는 임시시설 철판으로 OS청사도 임기응변식으로 높이차를 완화 시켜주었지만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기울기가 1/10로 조사되어 경사로 기울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의무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을 받았다, 주출입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청사 내 여러 곳에서 높이차이 때문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움이 많았다.

### 3.2. 내부시설

#### 3.2.1 출입구(문)

출입구(문)는 그 통과 유효 폭을 800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유효거리는 1200mm이상 확보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입문은 재질이 가벼운 미닫이문으로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출입문의 손잡이의 높이, 형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 인지도를 높여야 하고, 시설관리자를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있어야 한다. 조사대상 청사에서는 비교적 출입문의 기준은 지켜지고 있었으나 (그림 3)에서와 같이 JB청사는 출입문은 자동문이었고, 입구의 점자블럭이 사무실 내부로까지 연결되지 못하였다. KS청사의 장애인 호출용 벨의 경우 설치위치가 높아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높이에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표 5. 출입구

구분 청사명	문폭	손잡이		개폐방향	비고
		형태	높이		
JB청사	1900mm	-	-	자동문	통과 유효폭 800mm이상
JJ청사	1700mm	수직형	650-1150mm	양방향	전면유효거리 1200mm이상
KS청사	2000mm	수직형	1000mm	양방향	손잡이위치
OS청사	1800mm	수직형	900mm	양방향	800-900mm
KJ청사	1800mm	수직형	800mm	양방향	호출용 벨
NW청사	1800mm	수직형	900mm	양방향	점자 블럭



그림 3. 장애인 호출 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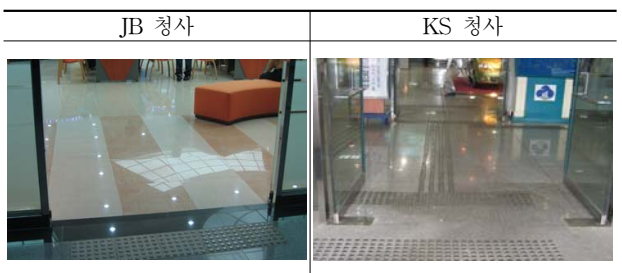


그림 4. 주 출입문 및 유도 점자 블럭

#### 3.2.2 통로 및 복도

복도의 유효폭은 1.2m로 하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표면의 재료는 평탄하고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계단,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의 0.3m전면에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의 0.8-0.9m높이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시청사의 복도는 1700-2400mm이상의 충분한 복도 폭을 확보하였으나 핸드레일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 3.2.3 계단 및 승강기

##### 1) 계단

계단 및 참의 유효폭, 디딤판과 쉘면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점자블럭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6>에서와 같이 조사대상 청사의 계단은 모두 격임 계단으로 되어있고 재질과 마감 재료는 줄눈 넣기를 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경질 고무류로 마감하였다. 그러나 <그림 5>에서와 같이 KS청사와 NW청사는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마감 재료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디딤판과 쉘면은 기준 내에 있었고 핸드레일은 원형의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었다.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30cm 전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 5. 계단

##### 2) 승강기

장애인의 층간이동을 위한 편의시설로 조사대상 청사 중 OS청사를 제외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OS청사는 장애인용 리프트도 설치되지 않아 상하층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았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청사는 JB청사뿐이었으며 나머지 청사는 비장애인과 겸용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조작반은 NW청사를 제외하고 일반 엘리베이터에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그림 6>에서와 같이 일부 엘리베이터에서는 진입방향 전면에도 설치되어 있기도 하였다. NW청

박창선

사는 구형엘리베이터로 유효바닥면적은 기준에 만족하였지만, 내부공간이 비좁았고 조작반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림 6. 승강기

표 6. 계단 및 승강기

청사명	구분	계단			승강기		
		형식	계단 폭	휠관 설치	핸드 레일	유효 면적	조작반 형태
JB청사	격임	2400	○	○	1700×2100	수평	700
JJ청사	격임	2200	○	○	1500×1500	수평	750
KS청사	격임	2200	○	×	1500×1600	수평	700
OS청사	격임	2000	○	○	-	-	-
KJ청사	격임	1800	○	○	1500×1600	수평	700
NW청사	격임	1800	○	×	1100×1100	-	-

3.3. 위생시설

3.3.1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 건물은 JB청사에 불과하며, KS청사와 OS청사는 미비하지만 접이식 칸막이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NW청사의 경우 민원실을 제외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미비하였다. 화장실의 재질과 마감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NW청사는 출입구 바닥에 10cm의 단차가 있었고, 바닥표면은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럼에 취약한 재질인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다. 또한 모든 청사에서 화장실의 30cm전면에 점자블럭을 설치하였다.



그림 7. 장애인 전용 화장실

3.3.2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는 모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대상 청사 모두 사용 공간 및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편의증진법상 핸드레일의 경우 수평 손잡이의 설치높이, 간격, 거리에 대한 기준만 있고 후면 손잡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다. 조사대상 청사의 경우 수평손잡이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설치높이가 기준에 맞지 않고 위치도 일정하지 않았다. 후면손잡이는 JB청사를 제외하고 위치가 일정하지 않았고, JJ청사, NW청사에서는 후면손잡이는 없었다. 그러나 B.C.Code나 ADAAG의 기준에 의하면 수평손잡이와 후면 손잡이의 위치 허용하중까지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편의증진법에 보완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OS청사의 화장실 접이문의 경우 제대로 닫혀 지지 않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결여된다. 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모두 설치한 경우는 JB청사와 KS청사였으며, 나머지 청사에서는 수직 손잡이만 설치되어 있었다. 세면대의 구조는 상단높이를 바닥으로부터 85cm이하로 하단 높이를 65c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JB청사 및 JJ청사, KS청사는 기준범위 내에 있었지만 나머지 청사는 기준에 미달되었다.

표 7. 장애인용 화장실

구분	단차	전용여부	유효면적	손잡이 높이	비고
JB청사	-	남,여 각	1700×2100	700	민원실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이용불편
JJ청사	-	남,여 각	1200×1300	700	위치 및 진입양호
KS청사	-	남,여 각	1100×2000	700	직각으로 진입, 출입불편
OS청사	-	남,여 각	1800×1400	700	여자화장실 점자블럭 없음
KJ청사	-	남,여 각	1600×2200	700	위치 및 진입양호
NW청사	-	남여공용	1200×1300	700	민원실만 설치



그림 8. 장애인 전용 화장실내 대변기, 소변기

3.4. 안내 및 기타시설

3.4.1 점자블럭

건축물 주 출입구의 30cm전면 바닥에 점자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표 8. 접수대

청사명 \ 구분	상단높이	하단높이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하부 공간
JB청사	900	800	450
JJ청사	850	800	400
KS청사	850	800	400
OS청사	900	790	300
KJ청사	750	730	300
NW청사	750	700	200

달리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청사 모두 점자블럭은 남용 되리 만큼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부에 설치된 점자블럭은 접촉이 불량하여 군데군데 떨어진 곳이 발견되었고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도 발견되었다.



그림 9. 점자블럭

### 3.4.2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의 설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청사의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JB청사와 JJ청사KJ청사만 있었다. 음성안내장치는 JB청사만 있었고 나머지 청사는 미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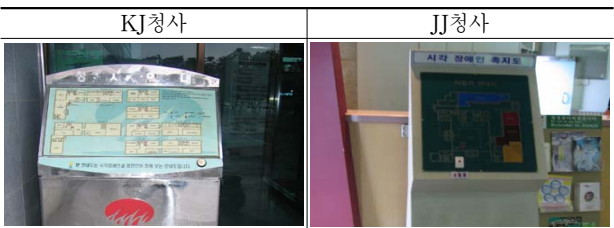


그림10.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판

### 3.4.3 접수대 및 작업대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활용공간과 구조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접수대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70-90cm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하부에는 45-65cm의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사대상 청사 모두 장애인용 작업 및 접수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NW청사의 경우에는 하부 공간이 20cm 정도 만 확보되어 있어 불편하였다. 상단의 높이도 75-90cm까지 일정하지 않았지만 기준 범위를 지켜졌다.



그림 11. 접수대

## 4. 종합

장애인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계획 및 설치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접근과 이동과 이용의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접근편의시설은 매개시설로 자동차 주차장 혹은 대중교통이용자의 접근로의 확보부터 주 출입구에서의 접근 경사로등에 관한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동편의시설은 내부시설로 이동공간인 복도, 계단, 승강기에 대한 시설과 이용편의시설은 화장실 등 위생편의시설, 안내 편의시설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이 다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고 장애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식별력이 높은 사인시스템이 요구된다 하겠다. 우리나라 편의증진법에서는 기준이 포괄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공업무시설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자체단체청사 마저도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편의시설기준인 ADAAG나 캐나다의 편의시설기준인 B.C.Code에서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4.1. 매개시설

주출입구로의 경사도가 1/12 이하인 청사와 임시용으로 철판으로 만든 청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보도면의 재질 및 시공정도 역시 요철이 심하고 전반적으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및 유도로는 보도위에 점착형 점자블럭으로 일부구간에 손실된 부분도 있었고 점형과 선형의 구분이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구역 크기는 법정 주차대수는 기준내로 만들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서 승하차하기 불편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시각적으로 구분이 용이하도록 바닥면에 장애인 전용표시와 황색이나 녹색으로 식별력을 높이도록 되었지만 도포면이 떨어져나간 주차장도 있었고, 주차장

에서 주 접근로까지의 점자 유도로가 미설치된 청사도 있었다. 주 출입구의 접근로 역시 전면진입로가 3단 이상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경사로를 만들었으나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오히려 장애인을 더 어렵게 하고 있었다.

#### 4.2. 내부시설

연속된 출입문사이의 유효거리나 출입문의 손잡이는 전반적으로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었다. 출입문의 개폐방식은 JB청사는 자동문이었으며 나머지 청사는 양방향으로 개폐방향에 따라 유효거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계단은 장애인을 위한 경사기준에 미흡한 청사도 있었으며 마감 재료 역시 미흡한 청사도 있었고, 계단의 핸드레일은 원형이었으며 일부청사에서는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계단 앞 30cm 전면에 점자블럭이 모두 기준 내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참의 유효폭, 디딤판의 너비, 켈면의 높이 등은 미흡한 청사가 많았다. 장애인 전용 승강기는 최근 신축된 JB청사를 제외하곤 나머지 청사 모두 비장애인과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승강기내 조작반의 위치 및 높이도 청사마다 다른 위치에 있었고, NW 청사는 조작반이 없었고 내부 유효면적도 좁아 불편하였다.

#### 4.3.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확보한 청사는 한군데 청사만이었고 일부 청사에서는 화장실내에 주름문을 이용하여 공간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이용효율이 낮아 일부 청사에서는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공 및 마감상태가 불량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머시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화장실 바닥면의 높이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물을 쓰는 특성상 일부청사에서는 3-5cm의 단차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변기와 소변기에 대한 규정은 수평손잡이에 대한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후면손잡이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잘 지켜지지 않았다.

#### 4.4. 안내 및 기타시설

건물 내 점자블럭은 잘 마무리되어 장애인을 유도할 수 있었으나, 외부 보도블럭 위에 설치된 점자블럭은 정밀시공이 되어있지 않아 일부구간에서는 손상된 부분도 있었고, 점형과 선형의 점자블럭이 혼용 사용되고 있어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에 서 점자 안내판 혹은 촉지도식 안내판을 확보한 청사가

있었지만 확보하지 못한 청사가 더 많았다. 접수대 혹은 작업대는 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확보한 청사가 있었고, 기준내의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 하부에 무릎이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45cm의 기준에 미달하는 청사도 있었다.

### 5. 결론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자치단체의 청사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계획시 모범이 되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일부 청사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접근로상에 존재하는 경사로의 경우 기울기가 법적기준에 미달되어 설치된 청사가 많았다. 이는 새로 신축된 청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청사에서 설치규정만 준수한 결과이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장애인에게 더 불편함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대기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양방향 출입문의 개폐 시 문제가 발생하여 부상을 당할 염려도 있었다. 둘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법정주차대수의 확보는 되어있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주차장의 규격으로 되어있어 승하차 공간 120cm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에 장애인 전용표시 및 사인보드가 필요하고 바닥 색채도포 규정을 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시공의 정밀성도 요구된다. 주출입구와 반대방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경우도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사도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셋째, 복도의 경우 핸드레일이 설치된 청사는 하나도 없었고, 계단의 경우도 일부 청사에서는 핸드레일이 없어 상하층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인전용 승강기도 부족하였으며, 조작반의 위치도 제각각이었다. 승강기가 없는 청사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넷째, 전용화장실을 확보한 청사는 하나였고, 일부는 그나마 접이식 전용화장실을 만들었으나 효용성에서 미치지 못하였다. 화장실내 손잡이의 설치는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으나 후면손잡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준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겠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때 진입각도 및 적정너비가 확보되지 못한 화장실, 대변기 칸의 유효폭을 만족시키지 못한 화장실도 있었다. 다섯째, 점자블럭의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마모성 및 정밀시공을 통해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고 선형과 점형블럭의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유도로 안내설비의 위치, 높이 등의 세부규정도 보완하고,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및 음성안내장치에 대한 규정도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작업대 및 접수대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강병근외 4인, 장애자를 위한 건축계획, 기문당, 1998.
2.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9.
3. 보건복지부,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지침, 2001.
4. 박옥희,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99.
5. 공보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논, 2000.
6. 이수용·박동준·오세규, 지역문화시설의 지체장애인동선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1권 2호. 2005.07.
7. 성기창·채철균, 장애인편의시설을 고려한 보편적 건축계획의 기본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9권 2호. 2003. 09
8. 최영오·박승환·최무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권7호 2004. 07.
9. 권원용, 미국장애인편의시설가이드라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10. B.C. Building Code. The Building Access Handbook. 1998.
11. ADA, ADA Accessibility Guidelines, 1998.